

2020년 2월 2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정책과 과 장 최명철(044-201-2511), 사무관 박유천(2522) / 제공일: 2월 21일(총 10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 주 요 내 용 》

- ◆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수의사법」 개정(공포 '19.8.27., 시행 '20.2.28.)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최대 1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 : ('13년) 14,862건 → ('19년) 46,964건(월 평균 3,900여건)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19년) :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0.2.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2019년 기준)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133성분 2,084품목, 2019년 기준) (참고3)

- ①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 ②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 ③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 ④ 생물학적 제제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 농식품부는 2013년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육하였다.

- 향후 시스템 사용 교육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내선번호 5)로 문의하면 된다.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시행령 제23조, 별표 제2호)

○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설정

①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②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③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

②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규정(시행령 제12조의2)

○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하여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 방지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수의사법 개정 내용 ('19.8.27공포, '20. 2.28 시행)

현 행	개정 법률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신 설></u>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의6.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
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
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
나 기피한 자

<신 설>

<신 설>

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
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
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
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
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
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
지 아니한 자

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
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
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
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
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u><신 설></u>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u>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2.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제12조의2(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u>법 제17조제5항</u>-----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 · 폐업 신고 수리 업무</u>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개정부분 발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사.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 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6	20	40	80
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 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	20	40	80
자.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 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			
1)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20	40	80
2)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40	80	100

참고 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133성분)

☐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18종)

물질명
Acepromazine, Alfaxalone, Atipamezole, Azaperone, Detomidine, Embutramide, Hydroxybromide glutamate magnesium salts, Isoeugenol, Isoflurane, Medetomidine, Metomidate, Pentamethylenetetrazol, Phenothiazine, Suxamethonium, Tricaines, Xylazine, Yohimbine, Yohimbine + Naloxone

☐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34종)

물질명
Actea + Aletris, Altrenogest , Androstone, Bovine somatotropin, Buserelin , Carbetocin, Chorionic gonadotropin, Cloprostenol, Dinoprost , Estradiol, Estrogen + Chorionicgonadotrophin, Etiproston Fertirelin,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Gonadorelin, Gonadotrophin, Gonadotrophin equine serum, Insulin, Lecirelin, Luprostio, Medroxyprogesterone, Melengestrol, Osaterone acetate, Oxytocin, Porcine somatotropin, Progesterone, Prostaglandin, ProstaglandinF ₂ α, Serotonin + Ergometrine, Serum gonadotropin + Chorionic gonadotropin, Testosterone, Tiaprost, Triptorelin Acetate, Vetrabutin

☐ 항생 · 항균제 유효성분(32종)

물질명
Amikacin, Aminosidine, Amoxicillin, Ampicillin, Apramycin, Cefovecin, Cefquinome, Ceftiofur, Chlortetracycline, Colistin, Danofloxacin, Dihydrostreptomycin, Doxycycline, Enrofloxacin, Erythromycin, Gentamicin, Kanamycin, Kitasamycin, Marbofloxacin, Minocycline, Neomycine, Josamycin, Oxytetracycline, Penicillin, Roxithromycine, Spira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Tildipirosin, Tilmicosin, Tulathromycin, Tylosin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

□ 생물학적 제제(21종)

축종	종류	대상 질병	비고
개	단일	광견병	
개	단일	디스토펜퍼(생독)	
개	복합	디스토펜퍼+전염성간염(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토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토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토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토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코로나바이러스	
개	복합	디스토펜퍼+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단일	렙토스피라	
개	단일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생균)	
개	복합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파라인플루엔자(생균 또는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코로나바이러스+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단일	파보바이러스(생독에 한함)	
고양이	단일	전염성복막염(생독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생독 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백혈병바이러스(생독 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소	단일	브루셀라	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
소	단일	탄저	
소	복합	탄저 + 기종저	
돼지	단일	일본뇌염	

※ 생물학적 제제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한글 표기

□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28종)

유효성분	비고
Atropine	
Cyclosporine	경구용 및 주사제에 한함
Dexamethasone	
Etilefrin HCL	
Enalapril Maleate	
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e+Praziquantel	
Flumethasone	
Flunixin	
Furosemide	
Heparin	
Hydrochlorothiazide	
Hydrocortisone	경구용 및 주사제(주입제 포함)에 한함
Imidapril Hydrochloride	
Isoxsuprine	
Mebendazole	
Meloxicam	
Milbemycin Oxime	
Moxidectin+Imidacloprid	
Phenylbutazone	
Pimobendan	
Prednisolone	
Ramipril	
Selamectin	
Spinosad+Milbemycin	
Temocapril	
Tetramizole	
Triamcinolone	경구용 및 주사제에 한함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 유효성분	반려동물용으로서 <u>Achromobacter s tenohalis, Carprofen, Chloramphenicol, Gamma globulin, Immunoglobulin, Ketoprofen, Maropitant, Melarsomine dihydrochloride, Moxidectin, Melittin</u> 또는 <u>Distilled water</u> 가 유효성분인 주사용 제제(품목)에 한함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